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기타 복리시설) ----- -----다음 각호-----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 판매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교집회장과 그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2. -----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중 소매시장·상점	3.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4.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5.~9. (생략)	5.~9. (현행과 같음)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③ (생략)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등을 수립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으로 따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9조·제10조·제13조, 제25조 내지 제29조, 제34조 내지 제38조와 제46조·제47조·제50조·제52조·제53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위협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복리시설 설치에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복리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2.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단지에 설치하는 복리시설과 큰 차이가 없을 것

